

8.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. 9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무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4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(2003. 9. 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감 형 우)

가. 개정이유

○ 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규정 중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제2조(도로점용허가)이 대상시설물에 “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”를 신설함.(안 제2조제3호)

다. 개정근거

☐ 관계법령

○ 도로법 제40조(도로의 점용), 제43조(점용료의 징수), 제44조(점용료 징수의 제한)

○ 도로법 시행령 제24조(점용의허가신청)제5항제11호, 제26조의5(점용료의 감면)

☐ 관련지침

○ 서울특별시 재시84000-74(2003.3.10)호에 의한 “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철저”와 관련 사항임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 음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